

2014 제31회 관세사 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

교시	시험과목	시험시간	수험번호	성명
2교시	관세율표 및 상품학	80분		

1. 관세율표상 반도체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논하시오. [50점]

- (1) 관세율표 제28류의 주 제8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'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처리한(doped) 화학원소(예: 규소와 셀렌) "의 모양에 따른 분류규정
- (2) 관세율표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"다이오드 ·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"의 정의
- (3) 관세율표 제8533호부터 제8542호까지의 분류체계(호의 용어를 근거로 함)
- (4)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되는 다음 물품에 대한 설명(관세율표 해설서를 근거로 함)
 - (가)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분류되는 주요 형태
 - (나) 발광다이오드(LED)
 - (다)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
- (5) 반도체 제조용(또는 검사용) 기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
 - (가) 관세율표 제84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규정한 제8486호에 분류되는 기계
 - (나) 웨이퍼(Wafer) 연마기와 웨이퍼 표면검사기가 결합된 기계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 16부의 주 제3호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 근거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

2.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서 과실의 가공과 관련된 다음 내용을 설명하시오. [10점]

- (1) 관세율표 전체에 해당되는 "건조한 것"의 범위 및 근거
- (2) 제8류의 주 제3호의 건조한 과실(견과류 포함)에 관한 규정
- (3) "삼투탈수" 방법(관세율표 해설서를 근거로 함) 및 동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는 류(Chapter)

3. 관세율표 제10부에 분류되는 펄프와 종이 및 인쇄물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기술하시오. [10점]

- (1) 제47류의 분류체계(호의 용어를 근거로 함)
- (2) 제48류의 물품과 제49류의 인쇄물의 차이점(제48류 주 제12호 내용을 근거로 함)
- (3) 제49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“인쇄된 것”에 대한 내용

4. 관세율표 제61류의 주(Notes) 와 제62류 주(Notes)의 대부분 내용은 일치하지만, 제61류 또는 제62류에만 규정된 다음의 내용을 기술하시오. [10점]

- (1) 제61류의 주 제1호
- (2) 제61류의 주 제2호가목
- (3) 제61류의 주 제4호
- (4) 제61류의 주 제5호
- (5) 제62류의 주 제1호
- (6) 제62류의 주 제7호

5. 다음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의 내용 중 일부이다. (1)부터 (5)까지에 해당하는 호와 그호의 내용을 함께 기술하시오. [10점]

제 16부의 주 제2호:

“기계의 부분품 [(1), (2), (3), (4), (5)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]은 이 부의 주 제1호, 제84류의 제 1호, 제85류의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. . . (이하 생략)”

6. 관세율표 제90류의 주 제6호에서 규정한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에 대하여 기술하시오. [10점]